

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29 / 전송(02)792-5208
학술면허국 국장 김성진 [6564] 학술면허관리팀장 이현호 [6553] 담당 김준환 [6529] / E-mail:alexantel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442-2622호

시행일자 2026. 6. 8.

수 신 각 연수교육기관장

참 조

제 목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(연수교육 지침 변경[제2026-2호])

1.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제43대 제4차 연수교육 시행·평가단 운영위원회(2026.5.12.)

나. 제43대 제67차 상임이사회 의결(2026.5.20.)

3. 상기 근거로 연수교육 시행·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 2026-2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신청 및 진행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동 지침 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□ 안내 사항

가. 증례, CASE, 사례 교육 평점 인정 변경

- 기존 실습 및 증례, CASE, 사례 교육에 대해 2시간에 1평점을 인정하던 것을 실습은 그대로 2시간에 1평점을 인정하되, 증례, CASE, 사례 교육은 1시간에 1평점 인정으로 변경

나. 규정 위반 연수교육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 변경

○ 지도·감독 미준수·미이행 시 - 1년 단위

1회	2회	3회
· 기관 경고(공문발송)	· 연수교육신청기관자격정지 60일	· 연수교육신청기관자격정지 1년

붙임 : 제2026-2호 연수교육 지침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